

한 · EU 동등성 인정 협정문(EU 측 서신)

Brussels, 17. 12. 2014

JO/sn/agri.ddgl.b.4(2014)4485741

최희중 실장님 귀하,

한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이하 'NAQS'라 한다)은 2014년 2월 18일에 한국이 유기식품 생산에 관해 동등한 제3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 보내왔습니다. 이제 본인은 집행이사회 규정(EC) No 834/2007¹⁾의 제3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의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 사무국은 최종 검토결과 및 EU 회원국의 동의에 따라 한국의 유기 시스템이 현 시점에서 규정 (EC) No 834/2007에서 정한 원칙 및 생산기준과 동등한 원칙 및 생산기준에 부합하고, 한국의 유기 시스템의 관리수단이 규정 (EC) No 834/2007에서 정한 관리수단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확정합니다.

동등성 인정은 EU에서 적용되는 가공식품의 정의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에 국한하여 적용됩니다.

동등성 인정은 이 서한에 첨부된 부속서 1에서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.

EU 집행위원회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집행위원회 규정(EC) No 1235/2008 부속서 III의 인정된 제3국 목록에 3년 동안 포함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동 규정의 개정예 착수하려고 합니다. 동등성 인정기간의 연장은 가능한 빨리 논의할 것이고, 이는 향후 EU와 한국 간 양자협정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.

Jerzy Plewa

총국장

1) Council Regulation (EC) No 834/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(EEC) No 2092/91, O.J. L 189, 20.7.2007<유기생산과 유기제품의 표시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>

부속서1

A. 한국 제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. :

1. EU규정 (EC) No 852/2004²⁾ 제2조제1항에서 정한 “가공식품”으로, 유기원료를 최소한 95% 이상 함유해야 하고, 한국산 그리고/또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한국 유기식품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이 이루어져야만 함;
2. “한국 유기식품법”에 따라 유기로 인증 받아야 함 ;
3. 금지된 농약, 방사선 조사처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한국 유기 식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금지된 방법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·가공된 것임을 한국 유기 식품법 및 그 규정에 따라 한국이 검증한 것이어야 함;
4. EU내에서 금지된 물질과 방법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유기생산기준에 대한 부적합의 위험 일반 평가결과에 기반한 잔류물질 시험요구사항을 적용받고, 해당하는 경우 집행이사회 규정 (EC) No 834/2007의 제30조에 따른 후속 규제 조치를 받아야 함.

B. 상기 A항에 해당되는 유기가공식품으로 EU에 수입되는 한국 제품(이하 “한국 유기 가공식품”이라 한다)은 집행이사회 규정(EC) No 834/2007의 제IV장과 규정 (EC) No 889/2008³⁾의 제III장에 따라 표시해야만 하고, EU 유기 로고 또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(MAFRA) 유기 로고나 이들 모두를 표시할 수 있다.

2) Regulation (EC) No 852/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(OJL139,30.4.2004,p.1)<식료품의 위생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>

3) Commission Regulation (EC) No 889/2008 of 5 Septem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(EC) No 834/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ing of organic products with regard to organic production, labeling and control (O.J. L 250, 18.09.2008, p. 1)<유기적인 생산, 표시 및 관리에 관한 유기적 생산 및 유기제품의 표시에 관한 이사회 규정(EC) No 834/2007의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>

- C. EU로 수입되는 한국 유기농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 부속서의 조항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규정 (EC) No 1235/2008⁴⁾의 부속서 V 에서 제시한 수입검사증명서를 동봉해야만 한다.
- D. 한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이하 'NAQS'라 한다)은 참조표준으로 ISO 17011을 적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정기심사를 수행한다.
- E.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유럽 집행위원회로 통보한다. :
1.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정지위에 관한 변경사항 ; 그리고
 2. 이 부속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의 규정 및 지침 개정(안) 및 최종 개정사항.
- F. EU 집행위원회의 사전 통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EU 당국자가 한국 유기 프로그램 관련 규제당국 및 인증기관이 한국의 유기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정기적인 현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련 규제당국, 인증기관, 한국 내에서 인증을 받은 가공시설 및 농장의 사무소 방문을 포함한 이러한 현장 평가를 수행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협력하고 지원한다.
- G. 농림축산식품부는 EU집행위원회에 매년 다음의 문서를 제공한다. :
1. 동 부속서에 따라 EU로 수출된 한국 유기농식품의 유형과 수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 ;
 2. 모든 관리감독 또는 심사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부적합의 유형, 그리고 부적합이 시정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취한 조치가 포함된 보고서 ; 그리고
 3. 한국 유기표준에 따라 인정을 받은 한국 유기시스템 인증기관 목록.

4) Commission Regulation (EC) No 1235/2008 of 8 Decem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(EC) No 834/2007 as regards the arrangements for imports of organic products from third countries.(O.J. L 334, 12/12/2008, p. 25.)<제3국으로부터 유기제품 수입 협약에 관한 이사회 규정 (EC) No 834/2007의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>